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소자의 노동과 일반근로자의 노동을 구분
시켰습니다.

법에도 적혀있듯이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이유에는 청소년은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부족한
사회경험을 빌미로 삼아 그들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빈재하나, 청소년 본인들은 그들의 노동 인권이 침해
당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행 계획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